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61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유용원 · 안철수 · 강선영
김소희 · 이인선 · 조승환
김 건 · 김미애 · 성일종
박충권 · 송언석 · 이달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가목 중 “군인”을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전역한”을 “전역 또는 퇴직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군인”을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p> <p>1. ~ 7. (생략)</p> <p>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군인</u>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u>전역한</u> 사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군인</u>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p>	<p>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p> <p>-----</p> <p>-----</p> <p>-----</p> <p>-----</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p> <p>-----</p> <p>-----</p> <p>가. <u>군인 또는 군무원</u>----- -----<u>전역</u> 또는 <u>퇴직한</u>-----</p> <p>나. <u>군인 또는 군무원</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
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
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
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
만 해당한다.

9. ~ 18. (생략)

② ~ ⑥ (생략)

-----.

9. ~ 1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